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송희경 외 2명  
소유물건(2025타경101064)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주정렬

감정평가서번호: BS2503-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산감정평가사사무소

#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정 유 진

감정평가액	구천일백일만원정(₩91,010,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주정렬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5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송희경 외 2명 (2025타경10106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3.10	2025.03.10	2025.03.11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95	토지	95	-	91,010,000
	제시외건물	(133.74)	제시외건물	(133.74)	-	감정평가외
		이	하	여	백	
<b>합계</b>					₩91,01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소재 "대신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3월 10일임.

###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03월 10일에 실시하였음.

### 4. 감정평가조건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

## III. 기타 참고사항

가. 본건 일련번호(1) 지상에 타인소유건물인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홍\*\* 소유로 등재된 건물[부록조 스라브가 2층건 주택1동 16평8홉6작(약 55.74㎡)]이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제시외건물 ㉠은 공부상 2층만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1층도 존재함 . 제시외건물 ㉠은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매됨이 없이 평가하였고, 제시외건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한 토지평가액을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제시외건물 ㉠의 1층 면적은 외부경계조사 불가하여 항공사진의 수평투영면적 기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제시외건물 ㉠은 타인소유건물로서 감정평가외 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100-107	
토 지 (일련번호 1)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주거용
	지 목	대
	공부면적	95 m <sup>2</sup>
	사정면적	95 m <sup>2</sup>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 (1) 토지의 평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1. 토지 감정평가액

#### (1) 대상 토지의 현황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m <sup>2</sup>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m <sup>2</sup> )
1	서구 동대신동2가 100-107	95	대	단독주택	2종일주	세로(불)	사다리형 고 지	462,200

#### (2) 토지 감정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3)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일련 번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
A	서구 동대신동2가 101-59	79	대	단독주택	2종일주	세로(불)	사다리 고 지	449,800

#### 나.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A 주거	0.087	부산광역시 서구 (25.01.01~25.03.10 ) (주거) 2025.01.01 ~ 2025.01.31 : 0.039 $( 1 + 0.00039 ) * ( 1 + 0.00039 * 38/31 ) \approx 1.00087$

※ 기준시점이 속한 월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상태인 경우,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 다.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라.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표준지A]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유사함.
		포장		
		보도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계통 및 연속성	1.00	유사함.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유사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도시가스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고저 등에서 열세하나, 획지 등에서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대등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2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유사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그 밖의 요인 보정

####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 (나)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

지목	지가수준(원/m <sup>2</sup> )	용도지역
대	900,000 ~ 1,000,000 내외	2종일주

#### (다) 본건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sup>2</sup> )	비고
(1)	서구 동대신동2가 100-107	95 중 38.78	2종일주	대	2022.10.29	법원경매	959,000	지분 평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라)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토지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	지목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m <sup>2</sup> )	비고
(1)	서구 동대신동1가 12-1**	81	2종일주	대	2024.05.24	법원경매	972,000	-
(2)	서구 동대신동3가 258-**	5.2	2종일주	대	2023.07.04	법원경매	812,000	-
(3)	서구 동대신동3가 263-*	20	2종일주	대	2022.08.30	시가참고	986,000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마) 인근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이용상황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서구 동대신동2가 10-**	2종일주 대/주거용	138,000,000원 (@1,031,000원/m <sup>2</sup> )	2023.06.13 1989.12.18	112.0m <sup>2</sup> 105.76m <sup>2</sup>	-
	의견	1) 벽돌조 2층 주택 건물단가 : 800,000원/m <sup>2</sup> × 12/45 ≒ 213,000원/m <sup>2</sup> 건물가격 : 213,000원/m <sup>2</sup> × 105.76m <sup>2</sup> ≒ 22,526,880원 2) 토지가격 : (138,000,000원 - 22,526,880원) / 112.0m <sup>2</sup> ≒ 1,031,000원/m <sup>2</sup>				
#2	서구 동대신동3가 258-1**	2종일주 대/주거나지	35,000,000원 (@1,000,000원/m <sup>2</sup> )	2023.03.20 -	35.0m <sup>2</sup> -	-
	의견	토지만의 거래사례임.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경매 동향

용도별	부산 서구 2024년 3월 ~ 2025년 2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단독주택	992,393,215	510,784,167	51.5	45	8	17.8
대지	372,038,940	231,545,367	62.2	74	16	21.6

(출처 : 인포케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

### ①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 ② 보정치 산정

#### < 비교표준지 A >

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a)	사례단가 <sup>1)</sup> (원/㎡)	시점 <sup>2)</sup> 수정	지역 <sup>3)</sup> 요인	개별 <sup>4)</sup>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972,000	1.00634	1.000	0.980	958,599		
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b)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sup>5)</sup> (원/㎡)	2.132	2.13
	449,200	1.00087	-	-	449,591		

<sup>1)</sup>평가사례 : 비교표준지A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평가사례(1)을 선정함.

<sup>2)</sup>시점수정(2024.05.24 ~ 2025.03.10, 서구 주거지역) : 0.634% (1.00634)

<sup>3)</sup>지역요인 : 비교표준지A는 평가사례(1)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sup>4)</sup>개별요인 : 비교표준지A가 평가사례(1)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함.

개별요인 비교치 (주거지대)						격차율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0.98	1.00	1.00	1.00	1.00	1.00	0.980

<sup>5)</sup>산출단가 : 원단위 미만 절사.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비교표준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비고
	일련 번호	공시지가 (원/m <sup>2</sup> )							
1	A	449,200	1.00087	1.000	1.000	2.13	957,628	958,000	-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4)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산정

#### 가. 비교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에 관한 의견	비교 거래사례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함.	#1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다.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1 주거	0.372	부산광역시 서구 (23.06.13~25.03.10 ) (주거)
		2023.06.01 ~ 2023.06.30 : -0.020
		2023.07.01 ~ 2023.07.31 : -0.017
		2023.08.01 ~ 2023.08.31 : -0.013
		2023.09.01 ~ 2023.09.30 : -0.015
		2023.10.01 ~ 2023.10.31 : -0.005
		2023.11.01 ~ 2023.11.30 : -0.056
		2023.12.01 ~ 2023.12.31 : -0.059
		2024.01.01 ~ 2024.12.31 : 0.463
		2025.01.01 ~ 2025.01.31 : 0.039
		$( 1 - 0.00020 * 18/30 ) * ( 1 - 0.00017 ) * ( 1 - 0.00013 ) * ( 1 - 0.00015 ) * ( 1 - 0.00005 ) * ( 1 - 0.00056 ) * ( 1 - 0.00059 ) * ( 1 + 0.00463 ) * ( 1 + 0.00039 ) * ( 1 + 0.00039 * 38/31 ) \approx 1.00372$

###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본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마.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 [일련번호1 / 거래사례#1]

조 건	항목	세항목	격차율	비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0.98	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 및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0.97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열세함.
		상가와의 접근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환경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유사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시설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0.98	고저 등에서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방위, 고저 등	자루형 획지		
		방 위		
		고 저		
	접면도로 상태	경사지		
		각 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유사함.
		기타		
개별요인비교치 (누계)			0.932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단가)

일련 번호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m <sup>2</sup> )	시산가액 (단가)(원/m <sup>2</sup> )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sup>2</sup> )						
1	#1	1,031,000	1.000	1.00372	1.000	0.932	964,467	964,000

※ 산출단가: 원단위 미만 절사.

### (5)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 가. 토지 시산가액(단가) 검토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sup>2</sup> )	거래사례비교법 (원/m <sup>2</sup> )	비고
1	958,000	964,000	-

#### 나.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 합리성이 인정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  
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	토 지 (제시외건물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토지 평가액: 63,745,000 원)	91,010,000
	제시외건물 (타인소유건물)	-
	합 계	91,010,000

결정의견	경매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 등을 참작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참고가격 자료(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를 고려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상기 평가액으로 대상부동 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

### 2. 기타 참고사항

-

#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100-107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95	95	958,000	91,010,000	
<	제시외건물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토지	평가액>				
			단가	671,000 원/㎡					
			총액	63,745,000 원					
㉠	<제시외건물>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100-107	주택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1층	(55.74)	(133.74)	-	감정평가 외	타인소유 건물
				2층	(78)				
<b>합 계</b>								<b>₩91,010,000.-</b>	
				이	하	여	백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소재 '대신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서하향 경사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4) 인접 도로상태

북서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7-12), 고도지구(15M이하), 상대보호구역(2024-08-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인 지역(고도지구 변경)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가. 본건 일련번호(1) 지상에 타인소유건물인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흥\*\* 소유로 등재된 건물[부록조 스라브가 2층건 주택1동 16평8홉6작(약 55.74㎡)]이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제시외건물 ㉠은 공부상 2층만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표기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1층도 존재함 . 제시외건물 ㉠은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는 이에 구매됨이 없이 평가하였고, 제시외건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한 토지평가액을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제시외건물 ㉠의 1층 면적은 외부경계조사 불가하여 항공사진의 수평투영면적 기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제시외건물 ㉠은 타인소유건물로서 감정평가외 하였음.

##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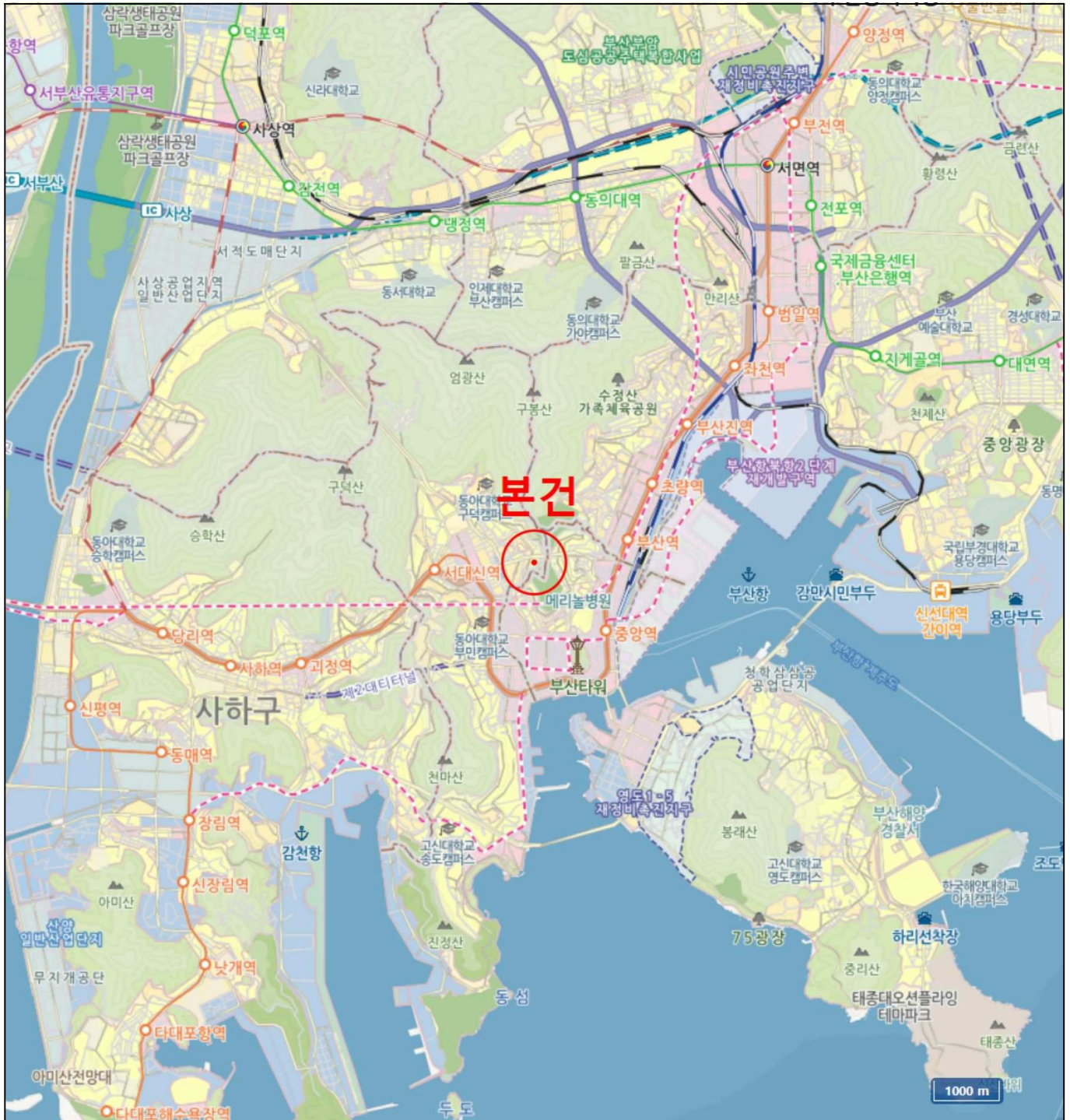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 미상임.
- 2) 기 타 : 없음.

#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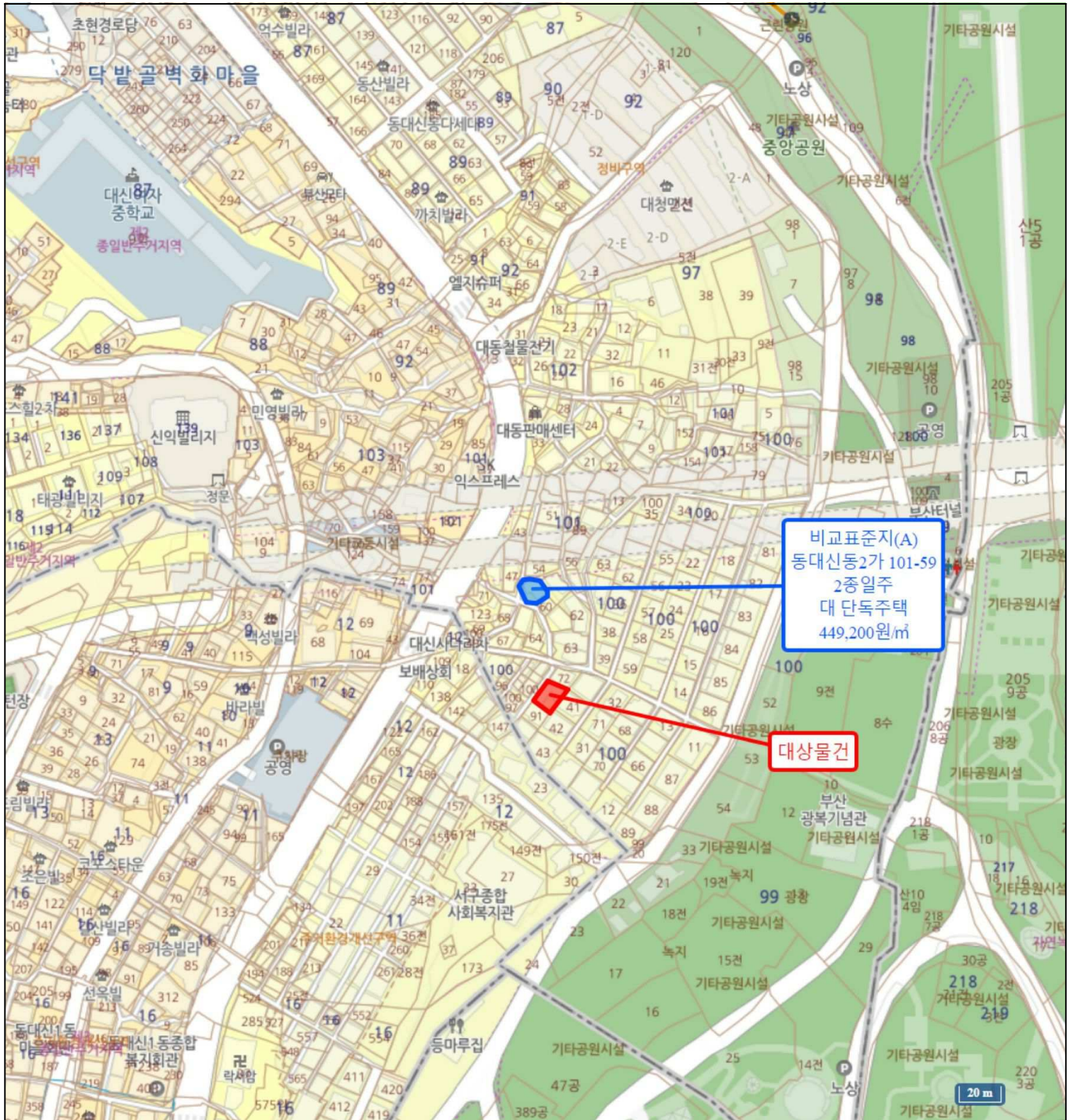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100-107
-----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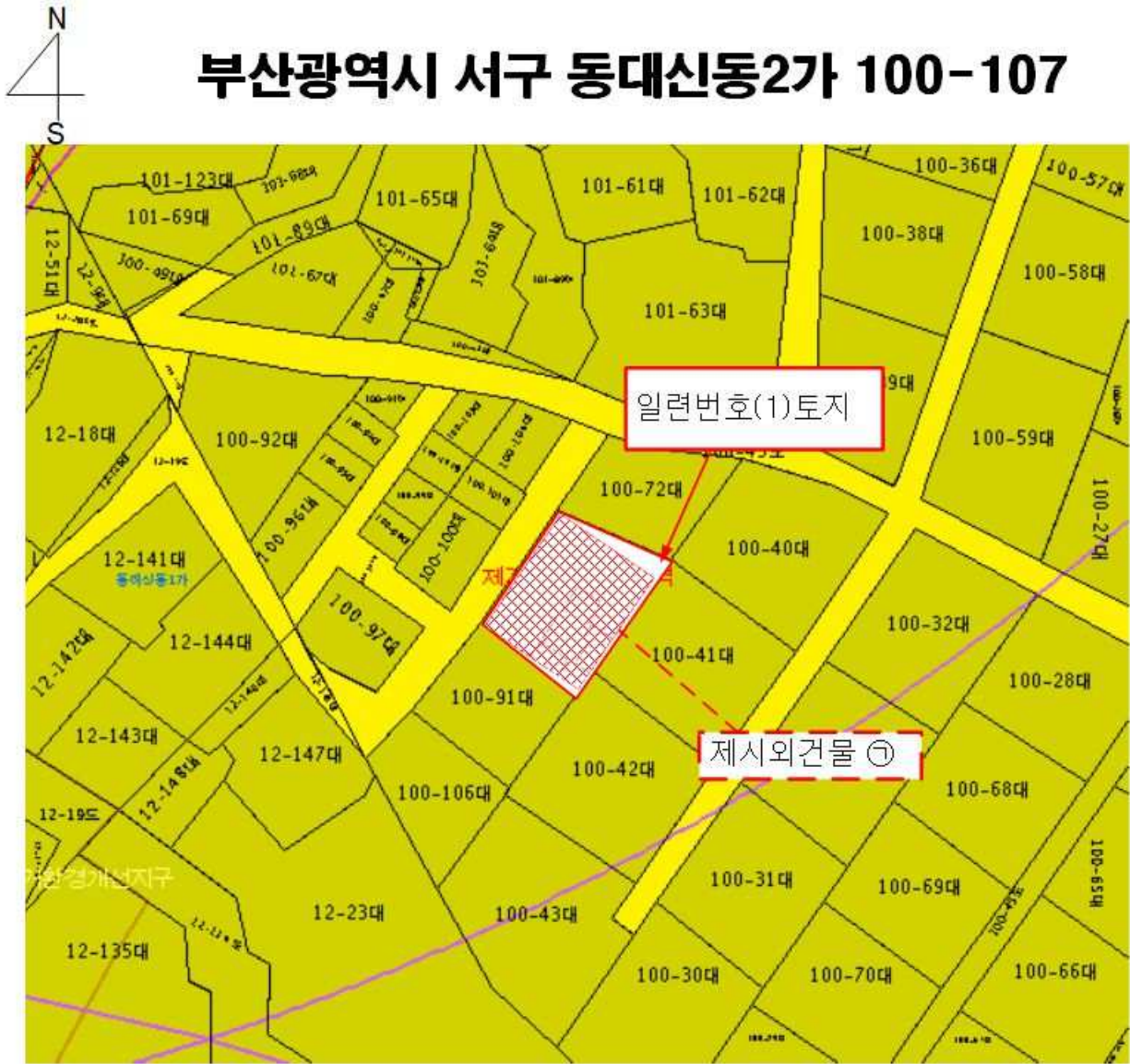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100-107



# 지 적 도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100-107



평가대상토지



제시외건물  
타인소유건물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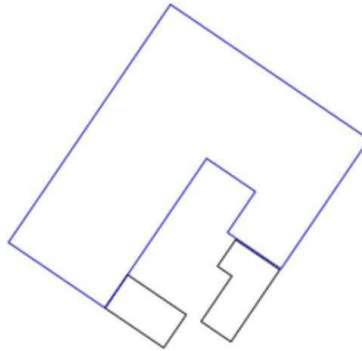
# 건 물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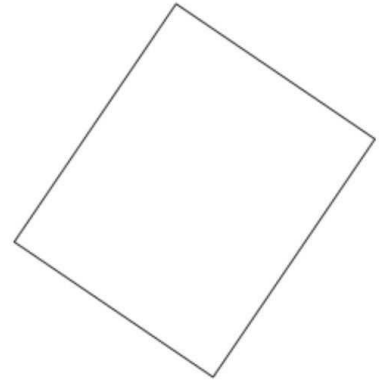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100-107



항공사진



2층



1층

제시외건물 ㉠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205번길 12-5 (소유장 : 홍\*\*)

1층 공부상 표시없음.

블록조 주택 : 약 78㎡ (외부경계조사 불가하여 수평투영면적 기준함).

2층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블록조스라브가2층건주택동 2층평 16평8홑6작

건축물대장 : 블록조 주택 2층 55.74㎡

타인소유건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에는

1층의 표기는 없고, 2층만 표기되었음. 1층 소재함에 유의바람.



